

# 2022년 함라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6. 14. ~ 6. 16.(3일간)
- 감사범위 : 2020. 4. ~ 2022. 4.(2년1월)
- 감사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사중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산업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 II 감사결과

### ○ 총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반환	세입조치	계	경상계	훈계	주의
13건	5건	8건	-	3건 (○○)	2건 (○○)	-	-	1건 (○○)	4건 (9명)	-	-	4건 (9명)

### ○ 수범사례(우수사례)

- ▶ 경청·소통의 현장 공감행정 추진
-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 전개

### Ⅲ

##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13건	시정 5 주의 8	회수 2 세입 1 (○○○)	주의 4 (9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세입조치 (○○○)	
3	공공요금 납부 지연 및 예산절감 노력 소홀	주의		주의 (2명)
4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위원 위촉사항 공고 등 미이행	주의		
5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주의		
6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시정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시정		주의 (5명)
8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주의 (1명)
9	인감 말소처리 부적정	주의		
10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처리 지연	주의		
11	수입증지 첩부 소홀 및 대학민원 수수료 처리 부적정	주의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주의		
13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 소홀	주의		주의 (1명)

## IV

## 지적사항 요약

###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우리 시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자체 기준경비 결정내역에 따르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매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자에게 월액여비 전액(170,000원)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관외 출장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 미숙으로 출장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명(총 ●●●원)에게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별표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제)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감사일 현재까지 원인미상의 고정 잔액(●●●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세입처리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③ 공공요금 납부 지연 및 예산절감 노력 소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에 의하면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관계직원은 청구된 공공요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청사 상수도요금 납부 지연으로 단수예고통지를 받거나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를 발생시켜 이를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10% 감면없이 지출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④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위원 위촉사항 공고 등 미이행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 센터의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2020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을 공고하지 않았고, 2021년 주민자치위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0년 6월 및 2021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5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에 의거 지방세의 과세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고,
- 위임 발급의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기재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위임장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등의 조치 없이 수리하여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6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 「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가구 개입 종결 후 9개월 내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종결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 가구에 대해 종결 후 3개월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개월 이내 2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 미실시하거나 1회만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망,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급대상으로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하였고, 차적변경 등으로 회수 사유가 발생한 ■명에 대하여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8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며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2020년,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 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지급 했어야 함에도 농지전용신고된 농지 등에 대하여 총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9 인감 말소처리 부적정

-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항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하 ‘인감 증명청’이라 한다)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신고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직권말소 처리하여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과 같은 인감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청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매월 수회에 걸쳐 발송하는 사망자 매·화장 처리결과 공문을 접수한 즉시 사망자의 인감대장을 말소처리 하여야 함.

▶ 그러나 합라면에서는 경로장애인과로부터 접수한 매·화장 처리 통보 공문 및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로 통보하는 11호 통보를 통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즉시 말소처리하지 않고 최장 ◆일 지연하여 직권말소 처리하는 등 인감증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0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처리 지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 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인감 이송 중 분실과 관련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증명청은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신 증명청은 인감대장 수령 등 현황을 관리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송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신증명청에 이송하지 않고, 총 ◇건을 지연하여 이송하는 등 인감증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1 수입증지 첨부 소홀 및 대학민원 수수료 처리 부적정

-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 및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따르면 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 첨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인감증명이 발급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열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미교부’ 라고 기재하고, 발급오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해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하며, 잘못 발급(훼손 등)된 인감증명서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지연 첨부하였고, 일일결산한 수입증지 수수료를 지연하여 세입처리하거나, 대학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 보관 후 월 단위 정산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였으며, 오류 발급으로 미교부된 인감증명서를 파기하지 않고 수입금 납입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실 등에 의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및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고, 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성명변경으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분실)임에도 면제 처리하거나, 면제 대상(성명 변경)임에도 기존 주민등록증 미반납을 사유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3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그 밖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에는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관계기관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이 발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함라면에서는 채무관계자가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변제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하지 않은 신청서를 보완 요구 등의 별도 조치없이 그대로 수리하여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우수사례

## 경청 · 소통의 현장 공감행정 추진

### ■ 사업 개요

- 마을순회 간담회 : 연 45회 실시
- 찾아가는 방문복지의 날 운영 : 복지사각지대 가구 연 20회 방문

### ■ 추진 계획

- 마을순회 현장간담회
  - ▶ 시기 : 연 45회 실시
  - ▶ 장소 : 마을회관 및 모정 등
  - ▶ 대상 : 지역주민
  - ▶ 내용 : 여론수렴 및 시정홍보,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해소
- 찾아가는 방문 복지의 날 운영
  - ▶ 시기 : 연 20회 실시
  - ▶ 대상 :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 ▶ 내용 : 이장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필요한 가구 방문

### ■ 기대 효과

-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행정 추진
-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
- 내고장 사랑하기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 유관단체와 함께하는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 전개

## ■ 사업 개요

- 홀로어르신 집 청소 봉사활동 : 분기 1회
- 마을 환경정화활동 : 분기 1회

## ■ 추진 계획

- 홀로어르신 집 청소 봉사활동
  - ▶ 시기 : 분기 1회
  - ▶ 대상 : 거동불편 홀로어르신
  - ▶ 내용 : 집 청소, 이불빨래, 목욕 등
- 마을 환경정화활동
  - ▶ 시기 : 분기 1회
  - ▶ 대상 : 함라면 일대
  - ▶ 내용 : 도로변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승강장 정비, 꽃나무 식재 등

## ■ 기대 효과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꾼다는 주인의식 함양
- 내고장 사랑하기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